

로템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2025. 2

로 템 요 양 원

로템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3조의3, 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로템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입소 어르신들의 학대방지와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4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 가. 책임관 : 로템요양원 시설장
 - 나. 운영(담당자): 로템요양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요양원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검할 수 있다.

제5조(CCTV 설치) ① 요양원 CCTV는 총 3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13대 (13개 침실 각 1대씩)
 2. 공용공간 총18대 (주출입구 실내 1대, 주출입구 실외 3대, 엘리베이터 내부 1대, 사무실 1대, 면회실 1대, 층별 복도 11대(1층 3, 2층 2, 3층 3, 4층 3),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요양원 출입구 및 요양원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요양원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촬영(움직임 녹화)
3. CCTV 정보보유기간 : 9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3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사무실에 있는 NVR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7조(CCTV 사용 제한) ①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8조(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이용일시 및 요청자(성명, 연락처)

2. 파일명/형태/내용

3. 이용목적/사유

4. 이용시간 및 이용장소

5. 담당자 확인서명

④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열람 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⑥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10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9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한다.

② 저장장치 보관 시설에 **장금장치를 설치** 한다.

③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요양원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⑤ 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9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하며, 제6호 서식에 의한 삭제파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장비관리) ①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7호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23.5.23」,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사무실, 현관 등)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로덴요양원(1-47110-00666)
- 동의 기간: 202 . . . ~ 202 . . . 현재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로덴요양원 시설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로댐요양원(1-47110-00666)
- 동의 기간: 202 . . . ~ 202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로댐요양원 시설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로댐요양원 시설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로댐요양원 시설장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로템요양원 시설장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로템요양원 시설장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 형태/ 내용	이용 목적/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확인서명	내부 관리계획 이행여부	비고
1	☐ 이용 ☐ 제공 ☐ 열람								☐	
2	☐ 이용 ☐ 제공 ☐ 열람								☐	
3	☐ 이용 ☐ 제공 ☐ 열람								☐	
4	☐ 이용 ☐ 제공 ☐ 열람								☐	
5	☐ 이용 ☐ 제공 ☐ 열람								☐	

작성요령

- 구 분 :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이용)
 - 열람 : 시설장 또는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어르신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 시 :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예시/ '25. 02. 25. 15:00 등).
- 요청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홍길동 02-123-4567
- 파일명/형태 : 관리하는 파일 명칭과 파일 형태르르 기재
예시) '25. 02. 25. 3~5번 CCTV/동영상 , 200706-0003-0010. mp4 등)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내부 관리계획 이행여부(CCTV설치, 성능 및 촬영시간, 안내판 설피, 영상정보, 저장장치 정상작동 여부, 삭제주기 등)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 표시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illegible]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로템요양원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로템요양원 시설장 귀하

로템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로 템 요 양 원